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6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엄태영 의원안)	2

I. 개요

1.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5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14.
- (3) 회 부 일 : 2024. 11.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임태영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 적용요건 - 합병가액 $\geq$ 순자산시가의 130% - 1년 이상 사업 계속 -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이 아닐 것 -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닐 것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지원내용: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 상당금액 세액공제 ○ 사후관리: 2년 이내에 의무위반사유 발생 시 공제된 법인세에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납부 ○ 적용기한: <u>2024.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 적용요건 -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또는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취득 + 경영권 인수) - 1년 이상 사업 계속 - 주식등 매입가액 $\geq$ 순자산시가의 130% $\times$ 당초지분비율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취득이 아닐 것 -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닐 것 - 피인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지원내용: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5% 상당 금액 세액공제 ○ 사후관리: 2년 이내에 의무위반사유 발생 시 공제된 법인세에 이자상당액가산하여 납부 ○ 적용기한: <u>2027. 12. 31.</u> (발의 당시 <u>2024. 12. 31.</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

* 입법예고안 2024. 11. 14. 발의(의안번호 5567)

□ 개정안은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¹⁾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합병법인·인수법인(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피인수법인(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양도·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²⁾의 10%(합병) 또는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지분비율 또는

② 양도·매입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 × 1.3) × 지분비율] 중 선택

5%(인수)를 합병·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는 2014년 신설된 후 세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4년 말로 적용기한이 종료되었고,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네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였음.

(단, 지분비율은 인수의 경우에만 적용)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연혁]

구분	도입 (‘14.1.1)	2015년 세법개정	2018년 세법개정	2021년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	2024년 세법개정
지원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u>합병·인수</u> 하는 내국법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u>인수</u> 하는 내국법인
공제율	<u>양도·인수</u> 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u>10%</u>	(좌동)	(좌동)	(좌동)	(좌동)	<u>인수</u> 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u>5%</u>
주식등 취득기간	최초취득일 현재	(좌동)	(좌동)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u>1년</u>)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u>2년</u>)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최대 <u>3년</u>)
적용기한	2015.12.31.	2018.12.31.	2021.12.31.	2024.12.31.	(좌동)	2027.12.31.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와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활성화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원
활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
를 유도할 수 있고, 투자를 받은 기업은 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음.

[국내 벤처투자 회수 유형별 비중]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IPO	26.7	38.9	32.1	24.3	32.3	30.6
매각	43.0	36.3	48.8	56.5	50.2	54.4
상환	12.5	13.3	9.8	9.6	8.6	7.6
프로젝트	16.6	10.1	8.7	8.8	7.4	6.4
기타 (배당, 이자)	1.2	1.4	0.6	0.8	1.5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주요국 대비 투자회수 방식이 M&A 보다는 IPO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IPO의 경우 창업 이후 장기간이 소요되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020년 6월 기준 자금회수에 대한 유형별 비율은 IPO가 29%, M&A 0.7%, 장외매각(주식+채권) 45%, 프로젝트 및 기타가 25.2%를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M&A 비중은 2.3%인데 반해 미국은 24.2%로 나타남.³⁾

둘째,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 간 M&A를 유도함으로써 유효한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로 나타나고 있고⁴⁾,

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연구」

벤처기업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음.

[벤처기업 경영 애로 사항]

(단위: %)

구분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해외시장 개척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국내 판로개척
응답비율	30.3	27.0	23.3	22.5

주: 3,000개 벤처확인기업의 표본조사 결과를 모수(36,959개, 개인사업자, 예비벤처기업, 휴·폐업, 청산·해산 제외) 추정한 결과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3. 12.

벤처기업이 자체적인 자금조달에 실패하더라도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자금력을 보유한 인수기업 또는 합병기업에 의하여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가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술 및 아이디어의 미활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제도는 그간 기업의 제도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중소벤처기업부, (사)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3. 12.

5) 동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적용사례가 1건에 불과함.

셋째,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인수합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 구축’, ‘M&A 매물정보의 질적/양적 확대’ 등이 제시된 반면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언급되지 않았음.

[인수합병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구분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 구축	M&A 매물정보의 질적/양적 확대	M&A 절차 간소화	M&A 전문가 및 중개기관 육성
응답비율	65.7	34.4	27.2	2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2023. 12.

문 의 처

02)6788-5154